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

Interlibrary use for e-journal: Current Issues and Suggestions

황 옥 경(Ok-Gyung Hwang)**

이 두 영(Too-Young Lee)***

초 록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preferable future strategies for interlibrary use of e-journal.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the meaning of interlibrary use for e-journal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disputes about it, and analyzed several license clauses for interlibrary use.

키워드: 전자저널, 라이선스, 라이선스 계약, 도서관 상호대차, 도서관 상호이용,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

E-Journal, License, Licensing, License Contracting, Interlibrary Loan, Interlibrary Use, Fair Use, First Sale Doctrine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hmirim7@dreamwiz.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eety@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04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22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FLA)은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대한 선언을 통해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유란 모든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인쇄 형태의 자원인 경우, 도서관은 구입 또는 구독을 통해 이들 자원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며, 이용자들이 별다른 접근 혹은 이용의 제한 없이 이들 자원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자저널과 같은 디지털 자원인 경우, 저널의 구독은 단지 특정 이용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이러한 전자적인 복제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권 및 이용권의 획득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출판사 혹은 대행사들은 도서관의 정보 접근 및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즈니스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은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서, 도서관과 출판사 혹은 대행사 간에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의 하나가 도서관 상호대차를

둘러싼 논란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상호대차라는 용어 자체가 전자 자료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도서관 상호이용이라는 용어로 칭하고자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국내 사서들의 상당수가 현재 체결되고 있는 해외 전자저널 관련 라이선스 상에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이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들이 실제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은 전혀 불가한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놓인 쌍방간에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논쟁점을 고찰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 조항 중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된 조항을 비교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국외 라이선스 사례와 비교분석 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상호이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논쟁점을 고찰하였고,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국내 라이선스 사례 및 국외 라이선스 계약모델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국내외 라이선스 계약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1.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상호대차라는 용어 대신 도서관 상호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차라는 용어가 제시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자료가 되돌려 보내진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가 직접 대차 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이 전달되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 의미는 해당 자료가 직접 대차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대차 개념은 인쇄 환경에서의 도서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도서관상호대차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Croft, 2001)라는 주장이 있으며,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도서관으로의 제공”(Cox, 2000) 혹은 “도서관상호이용”(Giavarra, 1998) 이라는 명칭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보상금제도에서는 “타도서관으로의 자료 전송”(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이라는 표현으로 도서관 상호대차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차’보다는 쌍방향적인 서비스의 의미를 포함하는 ‘도서관 상호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도서관 상호이용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도서관 상호이용은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적으로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도서관 상호대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온 배경에는 공정이용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는 저작권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논쟁점 및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1 전자저널의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베른협약 및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을 억제하는 경우,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저널의 이용과 관련한 공정이용의 제한은 다음과 같이 크게 저작권법에서의 제한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제한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 저작권법에서의 제한

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 제한은 크게 도서관 면책 조항의 축소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한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도서관 면책 조항의 축소: 국내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 제한을 통해 공정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3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

제27조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12일을 기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제28조는 도서관 면책 조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도서관은 관내 전송에 한해 “보관된 도서 등”만을 이용해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외 전송의 경우,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는 5년이 경과한 도서에 한하여 관외 전송을 위한 복제나 전송이 가능하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는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 허락 대상이 된다. 이는 이전의 저작권법에 비해 도서관에서의 면책 요건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보관된 도서 등”이 의미하는 것은 자관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축적되어 있는 디지털화된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저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 허락 대상이 된다. 이용 허락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다

시 한번 이용의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②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한 제한: 기술적 보호 조치란 저작권법 제2조의 제20호에 따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일종의 접근통제권이라는 새로운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다. 또한 제98조 제5호에 따르면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정보를 복제한다는 것이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접근은 오히려 저작물 구입을 위한 필요 예비행위로서 권장되었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접근이 복제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접근 자체가 저작물의 구매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보다 접근이 규범화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술적 보호 조치는 현재 양면 날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기술 보호 메커니즘이 있음으로써 권리자들은 일부 디지털 정보의 배포를 결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지 필요한 자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제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또 다시 공정이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 과정을 통한 제한은 다음과 같이 이용자 및 이용의 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진다.

① 이용자 인증 방식을 통한 제한: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서는 재학생과 교수, 직원들뿐만 아니라 졸업생에게도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이용에 대한 규정을 결정짓고 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이용자 인증 방식을 통해 특정 학술 집단의 공식적인 구성원에게만 이용을 허락하게 된다. 자관의 이용 혹은 접근 정책을 스스로 규정해오던 사서들에게 있어 이런 이용자 인증 방식은 접근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집단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정보를 폭 넓게 허용해오던 힘을 잃게 하는

것이다.

② 동시 접속 이용자 수 제한: 이제는 전자 자료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동시 접속 이용자 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존재할 경우 이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자원이 지니고 있는 주요 장점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런 장점을 제한하게 된다.

③ 이용 범위의 제한: 기존의 인쇄 형태 자원인 경우에는 도서관에서의 열람, 복제, 도서관 상호이용, 아카이브 등이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전자 자원인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러한 이용의 행태 하나하나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pay-by-view” 체제로 갈 경우, 단지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브라우징에도 가격이 책정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학술 집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최신의 정보를 찾아 즐겨 브라우징을 하며 이를 통해 뜻밖의 발견을 하는 기쁨을 누려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브라우징도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질적인 변화, 판매보다는 라이선스 이용의 증가, 기술보호 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변화로 인해, 개인들은 예전보다 더욱 새로운 발전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었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 되었다고 해서 그 저작권자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추가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변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할 점이다.

2. 2 전자저널의 최초판매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저작물의 배포를 허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일단 특정 복제물의 판매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원래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불법복제물이나 도난 또는 기타 불법적인 복제물의 경우에 저작권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복제권에 보완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따라서 배포권은 저작권자가 일단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최초판매의 원칙의 논거이다.

유체적 복제물의 소유권이 판매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배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유형적 재산의 소유자는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일반법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최초판매로 국한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이용하여 복제물의 계속적인 배포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둘째, 일단 유통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포권은 책과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자저널과 같은 디지털 복제물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체물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무체물의 배포는 전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전송이 완료된 시점에도 전송자는 전송의 대상이 되었던 저작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 것이 전송권의 신설이다. 전송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전송권을 통한 제한

이제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즉 전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송권을 득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도서관 상호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자저널의 일부를 1부 출력하여 인쇄물 형태로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다. 전송권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라 전송 및 출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제한

앞서 저작권법에서의 제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근 저작권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단 도서관이 구매하거나 구독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즉 저작권의 경쟁 제한적 목적에의 남용 제한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촉진 역시 그만큼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쇄 형태 자료에 적용되던 최초판매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디지털 자료가 갖고 있는 특성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2. 3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2. 3. 1 도서관 상호이용의 법적 규율

도서관 상호이용은 자관의 장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도서관 장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예산 지원을 잘 받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 상호이용은 다양한 크기와 유형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간의 자원공유라는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저작권법 제108조와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 Works) 지침은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도서관상호이용에서의 복제량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서관 사서와 저작권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 1988에 “도서관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 상호이용이 전자 환경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간의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관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자원을 의미한다.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도서관상호이용은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법적으로 크게 제한되고 있다.

2. 3. 2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앞서 2.1 및 2.2를 통해, 기존의 인쇄 자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공정 이용과 최초판매의 원칙이 전자자원 특히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그 접근과 이용이 크게 제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저널에서의 접근 및 이용의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주장할 수 있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인쇄 자료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의 도서관상호이용이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동일한 콘텐츠가 단지 전자적으로 배포된다는 이유만으로, 배포의 매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상호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의 매체가 무엇이 되었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은 동일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용자들은 더 나은 이용 환경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이용의 제한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은 전자전송물(e-products)이 상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서비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자전송물이란 종래 유체물의 형태로 제공되던 내용물 중심의 산물로서 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산물을 의미하며 전자책, 음악, 영상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이러한 전자전송물로 분류된다. 전자저널 역시 종래 인쇄 형태의 저널로 제공되었으나 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산물이므로 전자전송물로 분류된다. 현재 이 전자전송물에 대해서는 어떤 규범 체계에 의해 규율해야 하는지, 혹은 새로운 규범 체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세계무

역기구의 작업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적 전송물의 판매가 그 물리적 등가품(physical analogues)의 판매를 급속도로 대체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저널 역시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런 전자전송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전송물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일부 전자전송물의 경우에는 상품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다른 전자전송물은 서비스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며, 한 가지 전자전송물만 놓고 보아도 상품으로서의 특성과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자적 전송물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골격을 이루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중립성의 원칙

거래중립성의 원칙(principle of trade neutrality)은 동종생산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거래규범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동종생산품 분석에 있어서는 당해 생산품이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한다.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은 그 물리적 생산품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전자저널에 적용해 볼 때, 우선 유사성의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저널의 핵심은 콘텐츠이므로 콘텐츠만 놓고 본다면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이며,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 즉 시장은 인쇄

저널을 구독하던 이용자 집단인 대학도서관과 연구 기관들로서 동일하고, 질 높은 최신의 연구 결과를 요구하는 이들 이용자 집단의 요구도 인쇄 저널에서나 전자저널에서나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매체가 다르다는 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달 매체의 차이로 인해 이용자층의 연령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동열(1999)의 연구에서도 직급이 낮은 젊은 연령층의 교수들이 훨씬 전자저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문 계열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2) 기술중립성의 원칙

거래중립성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보다 최근에 나타난 원칙이 기술중립성의 원칙(principle of technology neutrality)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제공 기술이 변경되어도 적용되는 거래상의 보호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적이나 기록은 지면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에 비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전자저널에 적용한다면 전자저널은 인쇄 저널의 경우와 비교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인쇄 저널의 경우에는 도서관상호이용이 가능했는데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도서관상호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상호이용이 인쇄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사실이다.

2. 3. 3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계약 내용과 조건이 결정된다. 도서관 상호이용 역시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행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이해 부족

현재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언어적인 제약과 특정 기간에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되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라이선스 계약이 도서관 사서에 의해 직접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모체기관의 행정부서를 통해 체결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2) 라이선스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

현재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즉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현상이 도서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누적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은 기밀을 유지해

야 하는 관례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상호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련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인지하는 가운데 약속을 실천한다는 전제 하에 주고받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법리해석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 그 어느 경우이건 저작권법 혹은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해 놓은 세세한 규칙들에 의해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제 도서관계에서도 이러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3.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라이선스 조항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향후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 중에, 도서

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라이선스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3.1 국외

비교 분석 대상은 다음의 5개 라이선스 모델로서 본 연구의 사례로 채택한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LIBLICENSE 라이선스는 예일대학교 도서관이 개발한 것으로서 단일대학교도서관이 라이선스인 경우를 대표하는 사례라는 점
- 2) Cox 라이선스는 대형 텐더들이 개발한 라이선스라는 점
- 3) JSTOR 라이선스는 학술저널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 라이선스라는 점
- 4) CNSLP/PCLSN 라이선스는 캐나다의 대학 컨소시엄이 라이선스라는 점
- 5) JISC의 라이선스 모델은 JISC 저널 계약을 위한 출판사와의 협상에서 JISC 직원이나 대행사에 의해 이용되는 라이선스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라이선스 모델들이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 혹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LIBLICENSE 라이선스

LIBLICENSE 라이선스는 예일대학교도서관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예일대학교도서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을 위한 라이

선스 계약이 늘어나면서 대학도서관이 효과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WWW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CLIR)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곳의 자금 지원을 받아 LIBLICENSE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7년에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 곳을 통해 전자 자료의 라이선스 계약에 필요한 유용한 자원들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용어 및 정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논문들의 서지사항, 관련 웹 사이트로의 링크, LIBLICENSE 라이선스 모델, 그리고 LIBLICENSE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서들이 각 라이선스 항목별로 원하는 조건을 직접 선택해가면서 라이선스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두 26개에 달하는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선택항목이 제시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과 예문들이 제공되어 작성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LIBLICENSE 라이선스에서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은 제 IV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LIBLICENSE 라이선스는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혹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충족시켜줄 수 있다. 라이선스는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및 National Commission in New Technology Uses of Copyrighted Works에 의한 Guidelines for the Proviso of Subsection 108(g)(2) 3항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합의한다.

3. 1. 2 Cox 라이선스

Cox 라이선스는 EBSCO, Harrassowitz, Rowecom, Swets, Blackwell과 같은 대형 벤더들의 지원 하에 New-Orleans에서의 미국도서관협회(ALA) 모임에서 개발된 라이선스이다. 초안 작성의 자문 역할은 라이선스 계약과 콘텐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출판자문회사인 John Cox & Associates가 맡았다. 1999년 8월에 웹상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개정판이 2000년 5월에 올려졌다.

이 라이선스는 PA/JISC의 라이선스와 ALA의 전자자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원칙, ICOLC의 전자정보 수서 및 구매를 위한 성명서, 그리고 LIBLICENSE의 라이선스를 기초 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

네 가지 도서관 유형에 따라 네 개의 서로 다른 라이선스 계약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단일 대학도서관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셋째는 공공도서관, 넷째는 기업의 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위한 것이다. Cox 라이선스에서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IV. 라이선스 자료의 인증된 이용
 도서관 상호대차. 라이선스는 여타 기관으로부터의 도서관 상호대차에 대한 요청을

4. 다른 도서관으로의 복제본 제공
 4.1 [라이선스는 아래 제6조^{*)}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조사연구 혹은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이선스

자료인 전자 원본의 일부에 해당하는 인쇄 복제본을 {라이선시와 동일 국가 내} 다른 도서관의 인증된 이용자에게 [우편이든 팩스이든 [혹은 Ariel 이나 이에 상응하는 것을 이용한 안전한 전송이든] 전자파일을 인쇄 후 즉시 삭제시키는 조건 하에] 제공할 수 있다.]

혹은^{''}

[라이선시는 아래 6조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아닌 조사연구 혹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혹은 인터넷이나 그 외의 것을 통한 전자적 송신을 통해 전자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별 문헌의 복제본 한 부를 다른 도서관의 인증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혹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나 인증된 이용자 어느 쪽도 사적 연구 혹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대한 복제본 한 부를 또 다른 도서관 내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합의한다.]

['] 제6조는 금지된 이용과 관련된 조항이다.
^{''} Cox 라이선스에서는 선택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선택 조항들을 나열해 두고 있다. 각 선택 조항들은 “[]” 내에 명시되어 있다.
^{'''} 제3조 제3항은 라이선스 내의 여하한 내용도 저작권법에서 주어진 라이선시의 법적 권리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상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x 라이선스에서는 3가지 조항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락하는 조항이다. 단, 제1항은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제공하는 것

이고, 제2항은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제공도 허락하는 것이다. 반면에 제3항은 도서관 상호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다.

3. 1. 3 JSTOR 라이선스

JSTOR는 2002년 말 기준으로 250여 핵심 학술 저널에 대한 완전한 백업파일을 보유하고 전자 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이들 전자 자료에 대한 이용을 놓고 도서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JSTOR 라이선스에서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은 제3조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아래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3.5 라이선시는 다른 곳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호대차서비스라 불리는 일을 수행할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미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상호대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라이선스 자료의 디지털 복제본이 아닌 인쇄 형태의 복제본만이 도서관 상호대차에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STOR 라이선스는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도서관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제본은 불허하고 있다.

3. 1. 4 CNSLP/PCLSN 라이선스

CNSLP(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는 캐나다의 64개 대학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CFI), 그리고 캐나다 지방정

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5,000만 캐나다 달러의 3개년 프로젝트이다. CNSLP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술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학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술 출판물, 특히 과학, 기술, 의학 분야의 학술 출판물의 양과 폭과 깊이를 높이고, 전자 출판 형태의 비중을 높이며, 국제적인 학술 출판 시장에서의 캐나다 대학의 구매력과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캐나다 대학도서관이 전자저널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해 계약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2001년 2월에 이루어졌다. CNSLP/PCLSN 라이선스에서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은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다. CNSLP/PCLSN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 연구 혹은 사적 연구가 목적이거나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제공하는 경우, 혹은 Ariel을 통한 보안 전송의 경우 전송받은 도서관이 출력 후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에 한해 도서관 상호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다른 도서관으로의 복제본 제공
 4.1 회원은 아래 제 6조*에 따라, 비회원 도서관에 (우편이든 팩스이든 혹은 전자 파일이 인쇄 후 즉시 삭제되는 경우라면 Ariel과 같은 보안 전송이든) 상업적 이용이 아닌 연구 혹은 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인 디지털 원본의 일부에 대한 종이 복제본 한 부를 제공할 수 있다.

3. 1. 5 NESLi2 라이선스

NESLi2 Model Licence for Journals는 JISC 저널 계약을 위한 출판사와의 협상에서

JISC 직원이나 에이전트를 위해 1999년에 개발된 라이선스 계약모델이다. NESLi2 라이선스에서는 제3조 제1항 제7호에 도서관 상호대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3.1.7 다른 도서관의 인증된 이용자에게 (우편이든 팩스이든 혹은 보안이 되는 전송이든 디지털 파일이 인쇄 후에는 즉시 삭제되는 조건 하에) 연구 혹은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개별 문헌의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인쇄 복제 한 부를 제공할 수 있다.

NESLi2 라이선스 역시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제공하는 경우나, 디지털 파일을 보안 전송하더라도 전송받은 도서관이 인쇄 후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는 연구 혹은 사적 이용의 목적에 대해 도서관 상호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3. 1. 6 소결

국외 라이선스 모델의 사례별로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을 도표로 종합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Cox라이선스의 경우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가능한 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STOR 라이선스는 인쇄본 형태의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어 라이선서 측에 가장 유리한 라이선스임을 보여주고 있다. LIBLICENSE 라이선스는 도서관상호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서관 상호이용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CNSLP/PCLSN 및 NESLi2 라이선스는 인쇄본 방식과 보안 전송 후 출력

(표 1) 국외 라이선스 사례별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 비교

조항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SLI2
인쇄본 한 부		0***	0	0	0
허용 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동시에 파일 삭제	0**	0***	X****	0	0
전자적 전송		0***	X****		
불허		0***			

* 각 라이선스는 공히 사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LIBLICENSE의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4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 X의 표시는 라이선스 상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완료와 더불어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은 허용하
 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불허 조항을 택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Cox 외 다른 4개의 라
 이선스 사례를 보면 도서관상호이용을 완전히
 불허하는 라이선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 국내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라이선스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라이선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
 상이 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5개 라이선
 스이다.

- Consortium License Agreement(KESLI
 CONSORTIUM-KLUWER ONLINE)
- ISI agreement
- Nature Online Academic License Ag-
 reement
- Project Muse Subscription Agree-

ment

- ScienceDirect License Agreement
 for Electronic Publications and In-
 formation Services

대부분이 비상업적인 학술적 목적을 위한
 경우, 요청에 따라 저널 기사를 출력한 후 우
 편이나 팩스로 요청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두고 있다.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
 한 조항을 분석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 상에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라이
 선스 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비
 인증이용자의 이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조항
 이 들어 있는 경우, 도서관이 상호이용 서비
 스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2)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경우

관련 조항이 계약일반원칙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별도의 문서 내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공통적인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도서관이나 비영리기업 연구도서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이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요청받은 기사를 인쇄하여 요청 도서관으로 우편 발송을 하거나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들도 있다.

- ① 요청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비영리기업 연구도서관이 라이선스와 동일 국가 내에 위치해야 한다.
- ② Ariel 혹은 Prospero와 같은 팩스 기반의 서비스(인쇄 저널의 기사면이나 디지털 파일을 인쇄한 상태의 기사면을 그대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 전송)를 통한 자료 전달도 허용한다.
- ③ CONTU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한다.

- ④ 전자적 송신은 불허한다.
- ⑤ 라이선스는 도서관 상호이용 자료와 관련하여 도서관 상호이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삼간다.

국내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상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 상에는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락하되 이에 대한 홍보는 불허한다는 단서가 붙은 경우도 있어, 관련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대응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쟁점 및 현행 관련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

(표 2) 국내 라이선스 사례별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 비교

조항	A**	B	C	D	E
인쇄본 한 부		O***	O	O	
허용			O	O	
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동시에 파일 삭제					X****
전자적 전송					
불허					
명시되어 있지 않음	O				O

* 각 라이선스는 공히 사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계약 내용 기밀 유지를 요하는 라이선스가 있어 편의상 A, B, C, D, E로 명시.
 *** 구독자와 동일 국가 내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도서관 상호이용이 가능함을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있다.
 **** X의 표시는 라이선스 상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응 방안을 1) 도서관 상호이용의 기본원칙과 2) 공정 이용 및 최초판매의 원칙 및 3) 라이선스 계약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1 기본 원칙

전자도서관 혹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려는 노력 속에서 기존의 인쇄 형태 자원이 전자 자원으로 변환되거나 애초에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는 자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자원이 지니고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의 장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접근과 이용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인쇄 형태 자원의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에 미묘한 균형을 잘 유지하여 왔었고, 이러한 균형은 디지털 자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인쇄 형태 자원의 경우 도서관상호이용이 법제적으로, 그리고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처럼, 전자 저널의 도서관상호이용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매년 도서관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전자저널의 종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도서관이 모든 전자저널을 구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협동장서개발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자저널 구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관상호이용을 통해 자원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전자저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정이용이 디지털 시대에

도 유지되어야 한다. 전자저널의 도서관상호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을 따르게 되는 바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다음의 4.3. 라이선스 계약 관련 대응 방안을 참조한다.

4. 2 공정 이용 및 최초판매의 원칙 관련 대응 방안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의 원칙이 보장하는 도서관 면책은 저작권법상에 전송권의 신설로 인해 축소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면책조항의 축소

도서관 면책 조항의 축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도서관 사서들은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쌓는 동시에 입법 과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이용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라이선스 상의 여하한 조항도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분명하게 허용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못함을 명백하게 밝히는 문구를 라이선스 상에 포함시킨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제한

공정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조적인 저작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 도서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는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저작권의 중요성,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 라이선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된 이용 및 인증되지 않는 이용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의무에 대해 라이선스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해 둬으로써 라이선서와 라이선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라이선스가 되도록 상호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임을 라이선서에게 이해시킨다.

4. 3 라이선스 계약 관련 대응 방안

전자저널 도서관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이해 부족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은 도서관의 책임임을 명심한다.

둘째, 라이선스 상에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라이선스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용허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셋째,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허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에 임한다.

넷째,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은 적

어도 다음 조건 중의 하나가 되도록 한다. 여기서 ①의 조건은 인쇄 형태의 복제본 만을 허락하는 것이고 ②의 조건은 전자 형태의 복제본도 허락하는 것이다.

① 라이선스는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아닌 연구 혹은 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인 디지털 원본의 일부에 대한 인쇄 형태의 복제본 한 부를 우편 혹은 팩스 혹은 전자 파일이 인쇄 후 즉시 삭제되는 경우라면 Ariel과 같은 보안 전송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라이선스는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아닌 연구 혹은 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인 디지털 원본의 일부에 대한 복제본 한 부를 우편 혹은 팩스 혹은 인터넷이나 그 외의 전자적 송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에 관심 두고 있던 저작권법 이외에도 이제는 라이선스 계약이 기반하고 있는 계약법에 대한 교육 및 협상의 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2) 라이선스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

라이선스 상에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미국도서관 협회연맹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에서도 라이선스 조건의 비공개 요구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

련한 문제점을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 원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국내외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라이선스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쇄 형태로 출력하는 형식의 도서관상호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체결되는 라이선스 중에는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조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협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을 위한 본 연구의 대응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응방안의 기본 원칙은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의 원칙이 축소되어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은 라이선서인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라이선서의 공정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올바른 이용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시키는 동시에 저작권법의 중요성 및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도록 한다.

셋째,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상에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조항 내용은 연구 혹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도서관으로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대한 인쇄 형태의 복제물을 우편 혹은 팩스로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계약법과 관련한 교육 과정 및 협상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이 사서들에게 개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2001. 임원선역. 『디지털 딜레마』. 서울: 한울.
 임원선. 2001.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01(겨울호): 2-11.
 정동열. 1999.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 분석에 의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5-21.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각국의 컴퓨

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서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제도. 도서관보상금제도 설명자료[online]. [cited 2004.1.15] <<http://www.copycle.or.kr/popup/설명자료1.PDF>>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 ELECTRONIC COMMERCE 6 (WTO Economic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working Paper ERAD-99-01, Sept. 1999).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48)[online]. [cited 2003.7.1] <http://www.hmso.gov.uk/acts/acts1988/Ukpga_19880048_en_1.htm>
- Cox, John. 2000.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Third Millennium: Making Sense of Economic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Sustainability in the Scholarly Information Market Place: the Search for Digital Library Business Models*. National Maritime Museum, Darling Harbour, Sydney, May 2, 2000[online]. [cited 2003.7.2] <<http://www.lib.mq.edu.au/conference/sustainability/scholarly.html>>
- _____. 2000. Model generic licens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erials Review*, 26(1): 3-9.
- Croft, Janet Brennan. 2001. Model licenses and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from electronic resourc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9(4): 165-168[online]. [cited 2003.6.3] <<http://www.emeraldinsight.com/pdfs/ids294.pdf>>
- Giavarra, Emanuella. 1998. Licensing Digital Resources: How to avoid the legal pitfalls. European Copyright User Platform. Pre-print[online]. [cited 2003.2.7] <www.eblida.org/ecup/docs/warning.html>
- Okerson, Ann. 1999. The LIBLICENCE Project and How it Grows. *D-Lib Magazine*, 5(9)[online]. [cited 2003.5.2]. <<http://www.dlib.org/dlib/september99/okerson/09okerson.html>>
- <분석대상 라이선스>
- CNSLP/PCLSN 라이선스[online]. [cited 2003.6.8] <www.cnslp.ca/pr/achievements/CNSLP-License-12Feb01.doc>.
- Cox의 Model Standard License[online]. [cited 2003.6.3] <<http://www.licensingmodels.com>>
- JSTOR 라이선스[online]. [cited 2003.3.6] <www.jstor.org/about/license.html>
- LIBLICENSE Standard License Agreement[online]. [cited 2003.6.3] <<http://www.library.yale.edu/~llicense/standlicagree.html>>
- NESLi2 Licence for Journals[online]. [cited 2003.9.27] <http://www.NESLi2.ac.uk/NESLi2_lic_010903.htm>